# 성남시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성남시장이 사업주인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 정기관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에 있어 안전·보건업무,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업무를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이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 또는 관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 조직과 직무 제1절 안전보건관리 조직

-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시장은 시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안 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제8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항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자가 소속 직 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시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 등은 영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보건관리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시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 등은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11조(산업보건의)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산업보건의는 영 제3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산업보건의의 선임방법 및 자격 등은 영 제29조 및 제30조를 따른다.

#### 제2절 산업안전 · 보건위원회

-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산업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 ② 사용자위원으로서의 해당 사업장의 대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일정은 노사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노사 쌍방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노동자위원 과반수 및 사용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안건이나 이행방법 등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 하여 다음 각 호의 한 사람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장
  - 2. 안전보건관리 대행 지정기관의 장
  - 3.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장
  - 4.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장
  - 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6. 그 밖에 노사가 합의한 중재자
- 제16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17조(심의·의결사항의 공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시 소속 전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한다.

#### 제3장 안 전 · 보 건 교 육

- 제18조(교육의 종류) ① 시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하는 교육
  - 2.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 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4. 특별교육: 시장이 규칙 별표5 제1항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제19조(교육 실시방법)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괘도, 슬라이드, 유인물 등을 작성하여 실시하거나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③ 교육담당자는 교육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맞춰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 제20조(교육계획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중에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제29 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의 담당자로서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장 안전관리

- 제21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장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계획이 확정되면 전 부서에 통보하여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영 별표 20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을 지시할 수 없다.
  - ②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3조(안전검사)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영 제78조제1항 각 호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교부 받은 검사필증은 해당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법 제93조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로 하며, 검사 주기는 규칙 제126조제1항에 따른다.
- 제24조(안전수칙) ① 시장은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를 작성·게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현업 소속장,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 야 하고, 위험물을 다루거나 보관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화기물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직 원 외의 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제26조(작업중지) ①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 시 점검주관자가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중지, 작업변경 또는 인원의 대피 등을 명할 수 있다.
  - ③ 모든 작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 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사고 및 재해 예방과 확산 방지 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7조(안전표지)** ①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안전표지는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직원은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8조(안전표지의 종류) ① 안전표지는 산업안전 · 보건표지, 색채표지로 구분한다.
  - 1. 산업안전·보건표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표지로 서. 설치하여야 할 표지의 종류와 장소 등은 별표 3에 따라 시행할 것
  - 2. 색채표지: 작업장소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보조물로서 설치하는 표지
  - ② 각종 표지의 크기는 설치장소, 거리 또는 어구의 길이에 따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비례로 제작하여 관계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한다.

# 제5장 보건관리 제1절 보건시설

제29조(보건시설의 지원 및 운영) 시는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보건시설 및 장비를 지원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2절 건강진단

- **제30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 근로자는 시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 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31조(건강진단 실시방법) ①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2. 특수건강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가. 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 3.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 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5. 임시건강진단: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 ②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추가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32조(진단결과 조치) ① 시는 검진 기관으로부터 법 제132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후 개인표를 교부 받아 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표를 검진기관에서 직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건강진단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결과 증빙서류는 5년간 보 전하여야 한다.
- **제33조(작업환경측정)**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측정주기마다 고 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유해요인조사 등) ① 시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한 작업 또는 무리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시장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하여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른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사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사과정에 명예감독관과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 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알리고,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절 보호구

- 제35조(보호구 착용 작업 등) ① 시는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보호 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과 지급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1.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작업모, 절연용 보호구
  - 2. 전기, 산소용접 그 밖에 강렬한 광선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보안경
  - 3. 쇳가루가 많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보안경
  - 4. 소음이 많은 장소의 작업: 귀마개, 귀덮개
  - 5.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호흡용 보호구
  - 6. 피부에 상처를 주는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보호의
  - 7.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 8.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 사용은 하지 않는

다.

- ④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소속 근로자의 작업상 보호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할 것
- 2. 보호구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것
- 3. 보호구의 기능 상태를 착용 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 중 이상이 발견되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호구 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장을 작성할 것
- **제36조(지급사용)**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작업 인원 및 지급주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37조(보호구의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별로 보호구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부품교체를 제외한 보호구의 손질, 세탁, 그밖에 기능 유지상의 필요한 조치는 지급받은 자가 하여 이 하다
  -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분해,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질병자 근로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정신 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자
  -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질병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건 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9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취급하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규칙 제1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40조(사고 및 재해발생 시 조치) ① 직원은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출, 호송, 응급조 치 등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목격자 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사고 및 재해발생 현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 당시의 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 목격자 및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 규명하여 시설개수, 종사원의 교육 및 책임자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매년 사고 및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여 재해 다발분야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 제7장 위험성평가

- 제42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시장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제8장 보칙

- **제43조(포상)** ① 관리책임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소속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 ② 표창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 · 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 2. 그 밖에 안전 · 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제44조(징계)** ① 관계법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징계 요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자
- 제45조(기타 안전·보건관계 규정) 안전·보건 관련 다른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46조(서류의 보존) 시장은 법 제164조, 규칙 제24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 야 한다.
- 제47조(규정의 개정) 시장이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8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